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송아량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송아량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최근 취객에 의한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포함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택시 내부에 택시운수종사자를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나 장치도 없는 실정입니다.

아울러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‘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’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‘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’, ‘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’에 대해서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내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과 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

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